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4 선고 2021가단121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2.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3.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3. 8. 접수 제59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발 급 일	2015. 12. 11.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
보 증 금 액	450,000,000원 (324,000,000원으로 변경됨)
보 증 기 한	2016. 12. 9. (2021. 6. 30.로 변경됨)
대출과목/ 채권기관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 관하여 2021. 3. 3.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1. 6. 28.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 328,699,2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B은 신용보증사고 직후인 2021. 3. 8.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3. 8. 접수 제59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무렵 B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 18,623,500원¹⁾ ② 경남 밀양시 D 답 2150㎡ 중 1/4지분 : 39,000,000원²⁾ 2)

소극재산 : 원고에 대한 채무 324,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21. 6. 28.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또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직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피보전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무렵 B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담보의 부족상태에 빠져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앞으로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20. 5. 15.부터 2020. 10. 22.까지 사이에 B 또는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67,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합계 83,500,000원 이상의 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2. 20.부터 2020. 5. 15.까지 합계 44,000,000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위 기간 중에 B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2020. 10. 15. 및 2020. 10. 22. 합계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B의 관계,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 피고가 B소외 회사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을 알 수 없어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1. 3.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3. 8. 접수 제59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정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남 밀양시 E 대 238㎡ 중 1/2지분 (F 지분). 끝.

1) 개별공시지가 156,500원 × 238㎡ × 공유지분 1/2

2) 2021. 3. 4. 체결된 매매에서 정한 거래대금 156,000,000원(=78,000,000원 × 2) 중
공유지분(1/4)에 해당하는 금액